

위기의 자영업자 “내년부터 회식도 없고, 휴가비도 못 줘”

[최저임금 인상]

지난 7월 75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대기업의 시장 괴진출이나 주휴수당 지급 등이 진짜 문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인건비 인상부담이었다. 용인에서 패스트푸드 매장을 운영 중인 한 기맹점주는 “(지급까지는) 전제 매출에서 세전 7~8% 정도 가져갔는데, 내년을 대충 계산해 보니 인건비가 올라 3~4% 정도니 거의 반토막”이라며 “어두리 인건비 관리를 해도 150만~200만원 정도 더 돈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주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아들(아르바이트 직원)한테 주던 혜택이 없어질 것 같다”면서 “회사도 한 달에 한두 번씩 하고 아니면 휴가 간다고 하면 보너스도 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부터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서울

시협의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들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한테) 잠자는 먹고살기 위한 생존인데 안 되면 막판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지영업하기 쉬운 업종이 숙박업, 음식업인데 지금처럼 소득주도형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쪽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과당경쟁, 가격인하, 인건비 상승 등 내년에도 안 좋은 여건만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13년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해 온 계산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내년도 문제제가 아니라 해마다 오르는 문제라 더 심란하다”면서 “이 업을 그만두느냐 마느냐 기로에서 내년에 또 이 정도 폭으로 오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점주들이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계 회장은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산상 답이 안 나온다”면서 오늘부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넘게 삼겹살집을 운영하다 경영사장이 악화돼 올해 사업을 정리한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적용이 당장 내일인데 실제로 카드

수수료리더는 중소상인적합업종이 리든지 소득대체 해줄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 정책은 나와도 이미 늑장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걸로 (일반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실상 최저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의 수익구조 악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지만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더 큰 원인은 대기업의 시장 침탈이다. 그래서 주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면서 “수익이 악화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건물주한테 종속되고, (가맹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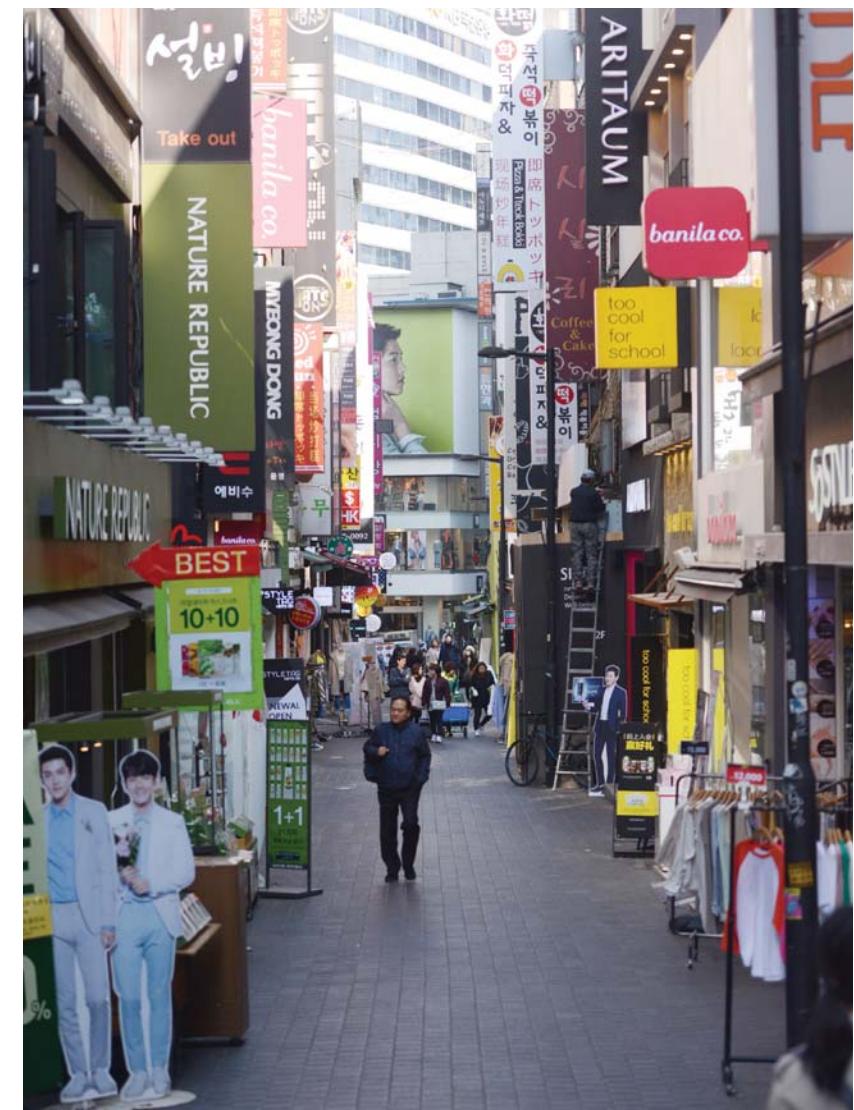
본사 갑질이라든지 대기업 시장과

잉진출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분위기 상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휴수당 지급 시스템 때문에 힘들어하고 털어놓는 가맹점주도 있었다. 경기도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0년 넘게 운영한 한 점주는 “최저시급이 오르는 건 다른 점주들 얘기 들어봐도 시대적 흐름이나 물가상승 이런 걸 감안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많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를 진짜 걱정하는 건 주휴수당”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급이 1000원 오르는 거지만 달로 계산하면 한 50만~6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플러스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면서 “사장님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주휴수당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최저임금에 ‘상여금·식비’ 포함 놓고 노동계 vs 경영계 격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경영계·노동계 주장 개요		
장점	경영계	노동계
신입 범위의 정도	현행 산입 범위는 실제 기업의 임금 살펴보다 차차하게 줍아 의도치 않은 혜택이 양산될 수 있음	기업의 임금 체계를 최저임금법에 맞춰 조정하면 될 사업이므로, 따로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은 없음
상여금, 숙박비 포함 여부	실제 기업에서 인고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어야 함	복리후생의 금품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통상임금과 일자리 여부	임금에 관한 통일적 규율을 위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을 일자리 캐야 함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임금 차이가 다르므로, 그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불합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회, 최저임금위원회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론을 벌이며 극한 대립 양상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정착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문제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상여금, 숙박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일각에선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대

고용부 올해 관련 제도개선 미무리

기업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시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같은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 쪽에서는 상여금과 숙박비 등은 인건비로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산입 범위가 실제 기업의 임금 실태보다 지나치게 좁아 의도치 못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 김동우 기획홍보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30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 상여금이 미미했고 기본급의 200~300% 정도였지만 지금은 대기업에서 800~1200%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법위가 현실적으로 돼 있어서 혜택은 고용도 안 정되고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실제로 혜택을 봐야 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율배반 “경영계가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가져가기 위한 품수가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15년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그 산입 범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협소하고 그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거나 호봉제 사업장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임금 체계를 최저임금법에 맞춰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정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법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원칙을 폐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상 정기상여금은 연간 단위로 지급률을 정해 일정기간 분할 지급한다는 점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되는 임금인 민족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선 ‘금전적 수당으로 지급하는 현물로 지급하는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문제들에 대한 실비변성적, 생활보조적 성격의 금부리는 점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현행 유지하는 1안과 부분 산입하는 2안, 모두 포함하는 3안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부분산입하는 2안은 1개월 주기 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숙박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방안이다. 고정성이 있는 정기상여금이라 해도 1개월 범위 내에 지급된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모두 포함하는 3안의 경우 지급 및 산정 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가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